

의안번호	제 411 호
의 결 연 월 일	2009년 9월 일 (제283회)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

발 의 자	최미애 의원 외 8인
발의연월일	2009년 9월 2일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 (최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11
----------	-----

발의연월일 : 2009년 9월 2일

발 의 자 : 최미애, 임 현, 김광수,
이범윤, 이종호, 정윤숙,
최광옥, 최재옥, 강태원(9인)

1. 제안 이유

-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아동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복지 발전에 기여함.

2. 주요 내용

- 가. 도지사는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 나. 지역아동센터장은 센터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를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 다. 도지사는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센터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안 제5조)
- 라. 충청북도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안 제6조)
- 마. 위원회에서는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시행 계획 및 아동관련 실태조사와 연구 등의 조정·심의 기능을 수행함.(안 제7조)

※ 조례안 : 11조 부칙 1조로 구성

3. 조례안 : 불 입
4. 관계법령 발취 : 불 입
5. 예산조치 : 예산외 추가지원 결정시 재원확보
6. 관련부서 협의 :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아동들의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3. “사업”이라 함은 지역아동센터 설립과정과 지역아동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센터의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 모두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건강증진과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과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정서함양과 문화활동 지원 사업.
4.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5. 아동과 그 가정을 위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산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모두에서 정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종사자 인건비와 이용아동 급식비.
 2. 센터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비.
 3. 센터 시설운영과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센터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충청북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충청북도 교육청 교육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2.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과 시설의 대표.
 3.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련된 시민단체 대표.
 4. 센터장과 시·도 연합회, 협의회 대표.

5.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6. 충청북도의회 의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관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 모두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센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시행계획.

2. 센터, 아동, 보호자의 실태조사와 연구.

3. 센터사업의 행·재정적 지원과 발전방안.

4. 아동의 보호와 상담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5. 그 밖에 센터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해임과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이나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아동복지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 함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3.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5. "아동복지시설"이라 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6.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라 함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가정위탁"이라 함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안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 ③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6.9.27>

제14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아동직업훈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15세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단기보호시설 : 일반가정에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간 보호하며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상담소 :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

화, 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기타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9. 아동복지관 :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0. 공동생활가정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1.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은 종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③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의 고유업무외에도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가정지원사업 :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업

2. 아동주간보호사업 :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3. 아동전문상담사업 :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4. 학대아동보호사업 :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5. 공동생활가정사업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방과후 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